

대체입력 사유 발생(소멸) 통보서 제출 기능 안내

□ 관련 근거

- 관련 고시* 제 18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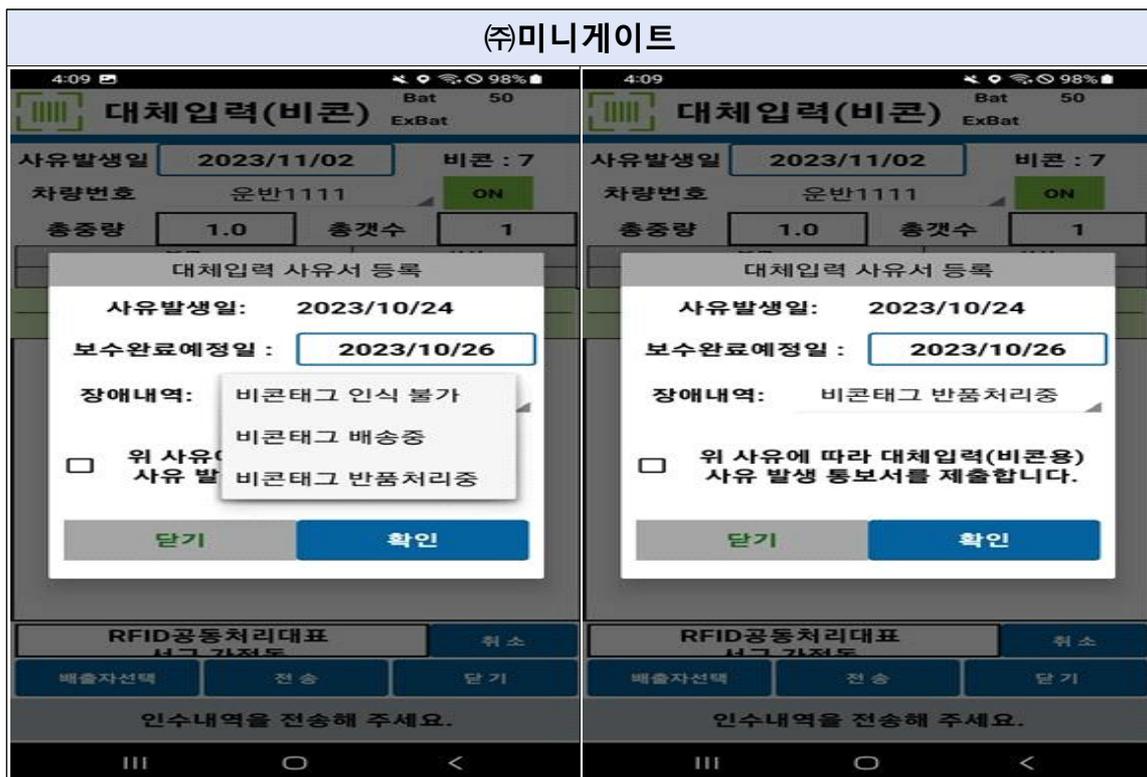
* 「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」 (덧붙임1~2 참조)

□ 기능 안내

< 대체입력 사유 발생 통보서 제출 >

- ① 휴대용리더기 **대체입력(비콘용)*** 메뉴를 통해 태그, 중량 등 입력
* 비콘태그 미인식, 배송 중 등의 사유로 배출자 인증이 불가할 경우 사용
- ② 전송 버튼 클릭 시 대체입력 사유 발생 통보서 화면 제공
- ③ 보수완료예정일, 장애발생(또는 보수) 내역 선택 후 제출

※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인계서 작성(생성)이 불가하며,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지속 반복 사용하는 경우 관할청으로 통보될 수 있음.



(주)에일리엔테크놀로지아시아

운반자 인수(대체입력) Batt: 34%

○ 사유발생일 **2023년 11월 16일** 대체입력 모드

○ 차번호 **운반1111** 비콘 7

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
| 상 세 | 폐기물 종류 | | | 성상 태반 |
| | 갯수 | 총중량 | 개당중량 | |
| 상 세 | 일반의료폐기물 | | | 고상 |
| | 1 | 1.0 | 1.0 | |

○ 총갯수 : 1 ○ 총중량 : 1.0 Kg

대체입력: 비콘태그테스트(에일리언)3 (#파...

배출자선택 전 송

COPYRIGHT © 2019 K-eco. ALL RIGHT RESERVED.

운반자 인수(대체입력) Batt: 34%

대체입력 사유 선택

- 비콘태그 인식 불가
- 비콘태그 배송중
- 비콘태그 반품처리중

○ 현재 사유 비콘태그 배송중

○ 사유 발생일 2023-11-16

○ 보수 완료일 2023-11-30

취 소 선택

COPYRIGHT © 2019 K-eco. ALL RIGHT RESERVED.

한울 주식회사

KT 2:59 100%

대체입력(비콘용) 연결되었습니다

■ 사유발생일 **2023-11-02**

■ 차량번호 **운반1111**

| 종류 | 성상 | 개수 | 총중량 | 개당중량 | 태반개수 |
|------|----|----|-----|------|------|
| 일반의료 | 고상 | 1 | 1 | 1 | 0 |

알림

대체입력사유발생 2023-10-24

비콘태그 인식 불가

비콘태그 배송중

비콘태그 반품처리중

아니오 예

■ 총중량 **1** kg ■ 총갯수 **1**

비콘태그(한빛100)_10 취 소

배출자 선택 전 송 이전화면

태그를 스캔하세요.

||| ○ <

KT 2:58 100%

대체입력(비콘용) 연결되었습니다

■ 사유발생일 **2023-11-02**

■ 차량번호 **운반1111**

| 종류 | 성상 | 개수 | 총중량 | 개당중량 | 태반개수 |
|------|----|----|-----|------|------|
| 일반의료 | 고상 | 1 | 1 | 1 | 0 |

알림

대체입력사유발생 2023-10-24

일:

보수완료예정일: **2023-11-03**

(이전)장에 비콘태그 배송 중 발생내역:

(현재)장에 비콘태그 인식..

발생내역:

(체크박스, 필수체크)

아니오 예

■ 총중량 **1** kg ■ 총갯수 **1**

비콘태그(한빛100)_10 취 소

배출자 선택 전 송 이전화면

태그를 스캔하세요.

||| ○ <

<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 제출 >

- 휴대용리더기에서 비콘태그가 인식되어 전송될 경우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멸 통보서는 자동 제출되도록 적용

※ 직전에 제출한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 되기 전에는 장애내역과 보수완료예정일을 수정할 수 있음

| 구분 | [메뉴] 운반자 인수 | [메뉴] 대체입력(비콘용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체입력 사유 소멸 대상 | 직전에 제출한 대체입력 사유 발생 통보서 | |
| 대체입력 사유 소멸 조건 | 비콘태그를 인식하여 전송하는 경우 | 배출자 선택 후 전송 시 비콘태그가 정상작동 하는 경우 |

☞ <예시 1>

- ① AB치과 9월 20일에 방문. 비콘태그 인식 불가 사유로 대체입력(비콘용) 메뉴 통해서 전송
- ② 대체입력 사유 발생 통보서에서 보수완료예정일을 2주 후인 **10월 4일**로 선택하고 장애내역은 비콘태그 인식 불가로 제출
- ③ 이후 10월 4일에 AB치과를 방문. 운반자 인수 메뉴 통해서 비콘 인식(배출자 인증) 후 전송
- ④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,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를 10월 4일에 제출한 것으로 자동 반영

☞ <예시 2>

- ① CD의원 1월 1일에 방문. 비콘태그 반품 처리하여 대체입력(비콘용) 메뉴 통해서 전송
- ② 대체입력 사유 발생 통보서에서 보수완료예정일을 2주 후인 **1월 15일**로 선택하고 장애내역은 비콘태그 반품 처리 중으로 제출
- ③ 이후 1월 15일에 CD의원을 방문하였으나, 비콘태그를 배송받지 못함
- ④ 대체입력(비콘용) 메뉴의 대체입력 사유 발생 통보서에서 직전에 제출한 보수완료 예정일을 변경(1월 15일 → **1월 30일**) 후 제출
- ⑤ 이후 1월 20일에 비콘태그를 배송받아 설치 완료
- ⑥ 1월 25일에 CD의원을 방문. 운반자 인수 메뉴 통해서 비콘 인식(배출자 인증) 후 전송
- ⑦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,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를 1월 25일에 제출한 것으로 자동 반영

제17조(대체입력 사유)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무선인식방법이 아닌 [제19조](#)에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장비 개선·변경·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화재,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
3.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제18조(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) ① 사용자는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배출, 수집·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[제19조](#)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입력해야 한다.

1. 배출자 및 수집·운반자는 폐기물을 인계·인수한 당일 24:00까지(다만, 인계·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이 소각처리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)
2.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, 소각시설 투입 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

② 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[별지 제2호서식](#)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할 지도·점검기관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)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통신장애,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팩스(FAX)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도·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입력 사유, 기간 등을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, 개선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[제17조](#)의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그 사유가 소멸된 날 부터 3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[별지 제2호 서식](#)의 대체입력 사유 소멸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19조(대체입력방법) 무선인식방법의 대체입력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, 유·무선 전화 등을 사용한다.

제20조(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) 사용자는 [제17조](#)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[별지 제2호서식](#)에 따라 제출한 기간([제18조제3항](#)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) 내에 개선해야 하며,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[제18조](#)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.

제21조(대체입력사유 확인) [제17조](#)의 대체입력사유 및 [제20조](#)의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,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.

